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08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이용우 · 윤준병 · 윤종균
이수진 · 김한규 · 김남근
정태호 · 진성준 · 남인순
서삼석 · 박 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을 포함하며, 이들 물질은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특히 수소불화탄소(HFCs)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높은 지구온난화지수로 인해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국제적인 규제 대상 물질로 포함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대형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및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냉매의 제조·수입·판매·사용·회수·처리 등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냉매의 제조·수입·판매, 냉매사용기기·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억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냉매사용기기”, “냉매사용제품”, “용기”, “재생”, “파괴” 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냉매와 관련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누구든지 냉매를 고의로 누출하지 않도록 함(안 제76조의10).

라. 냉매사용기기·제품에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76조의11).

마. 냉매제조·수입자들은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12).

바. 냉매사용기기·제품을 제조 또는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냉매를 사용하는 자는 냉매의 사용량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13).

사. 냉매제조·수입자들은 냉매를 담아 판매하는 용기를 수거하고, 용기 내 잔여 냉매를 회수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76조의14).

- 아. 냉매사용기기·제품제조자들은 냉매사용기기·제품의 제조·수입·판매량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15).
- 자. 냉매사용기기·제품제조자들은 기기·제품에 냉매의 종류 및 지구온난화지수, 충전된 냉매의 양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16).
- 차.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들은 기기의 설치 및 폐기를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17).
- 카.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들은 냉매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76조의18).
- 타.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가 다량 누출되는 경우 냉매사용기기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76조의19).
- 파.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들은 기기를 폐기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냉매를 회수하도록 함(안 제76조의20).
- 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등록하도록 하고,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록의 취소사유,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6조의21부터 제76조의25까지).
- 거. 공공기관들은 냉매사용기기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냉매사용 제품에 대해서도 냉매를 회수하도록 함(안 제76조의26).
- 너.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들은 회수된 냉매를 재사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안 제76조의27).

- 더. 냉매처리업자가 회수한 냉매를 재생하려는 경우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냉매를 재생하도록 하고, 재생냉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품질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76조의28 및 제76조의29).
- 러. 냉매처리업자가 회수한 냉매를 파괴하려는 경우 기준에 따라 냉매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76조의30).
- 며.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기기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재생냉매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등은 기기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재생냉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76조의31).
- 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에 관한 각종 통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76조의32).
- 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76조의33).
- 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사용과 누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7조의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냉매사용기기”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열원장치, 열 운반 장치, 자동제어 장치 등 장치의 기능수행을 위해 부속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5. “냉매사용제품”이란 냉매사용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또는 상업용 등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6. “용기”란 냉매를 저장·보관·운반 또는 회수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재생”이란 회수한 냉매에서 불순물 등을 제거하여, 성능 또는 품질을 본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파괴”란 냉매가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안전한 방식으로 제거하여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냉매의 사용, 냉매와 잔여 냉매의 회수·재생·파괴, 용기의 수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76조의9를 삭제하고, 제76조의10을 제76조의20으로 하며, 제76조의11을 제76조의21로 하고, 제76조의12를 제76조의22로 하며, 제76조의13을 제76조의24로 하고, 제76조의14를 제76조의12로 하며, 제76조의15를 제76조의32로 한다.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10(냉매의 누출금지) 누구든지 냉매사용기기 또는 냉매사용제품(이하 “냉매사용기기·제품”이라 한다)과 용기 등으로부터 냉매를 고의로 누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11(냉매의 사용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사용 및 누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를 냉매사용기기·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냉매의 종류별 지구온난화지수
2. 대체 가능한 냉매의 개발 수준
3. 대체 가능한 냉매를 사용할 수 있는 냉매사용기기·제품의 기술

개발 수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려는 냉매사용기기·제품의 범위, 지구온난화지수와 사용제한의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6조의12(중전의 제76조의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12(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신고) ① 냉매를 제조·수입하거나 제조·수입된 냉매를 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냉매 제조·수입자등”이라 한다)는 냉매의 종류, 제조·수입·판매량, 판매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3부터 제76조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13(냉매의 사용량 신고) ① 냉매사용기기·제품을 제조하거나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냉매를 사용하는 자는 냉매의 종류와 사용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4(용기의 사용 등) ① 냉매(제76조의28제1항에 따른 재생냉매를 포함한다)제조·수입자등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② 냉매제조·수입자등이 냉매를 재충전이 가능한 용기(이하 “재충전용기”라 한다)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충전용기를 수거하여 용기 내의 잔여 냉매를 회수하고, 회수한 냉매를 재생하거나 파괴하는 방식으로 처리(이하 이 장에서 “처리”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수거된 재충전용기를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 냉매제조·수입자등이 냉매를 재충전이 금지된 용기(이하 “재충전금지용기”라 한다)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충전금지용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하고, 용기 내의 잔여 냉매를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냉매제조·수입자등에게 냉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재충전금지용기의 수거에 협조해야 한다.

④ 냉매제조·수입자등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용기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냉매제조·수입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용기의 수거·관리실적, 용기 내 잔여 냉매의 회수·처리 실적 등을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6조의15(냉매사용기기·제품의 제조·수입·판매량 신고) ① 냉매 사용기기·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이하 “냉매사용기기·제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냉매사용기기·제품의 제조·수입·판매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6(냉매사용기기·제품의 정보 표시) ① 냉매사용기기·제품 제조자등은 냉매사용기기·제품의 겉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냉매의 종류 및 지구온난화지수
2. 충전된 냉매의 양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냉매사용기기·제품제조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표시를 시정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1. 냉매사용기기·제품의 겉면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냉매사용기기·제품에 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냉매사용기기·제품제조자등은 해당 명령을 이행한 후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7(냉매사용기기의 설치 신고 등)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사용기기의 설치·폐기(매매·임대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76조의18(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의 준수사항) ①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누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누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냉매 누출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누출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기기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수함으로써 냉매의 추가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④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검결과와 유지·보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6조의19(개선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누출되어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냉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해당 명령을 이행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의20(중전의 제76조의10), 제76조의21(중전의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22(중전의 제76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20(냉매의 회수 등) ①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냉매를 회수해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를 폐기하려는 경우
2. 냉매사용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품, 그 밖에 다른 제품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3.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설치하

려는 경우

4.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사업장 내에서 재사용(사업장 내에서 회수한 냉매를 해당 사업장 내의 냉매사용기기·제품에 다시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5. 냉매사용기기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

②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제76조의2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냉매회수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냉매회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 또는 냉매회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냉매회수기준에 따라 냉매를 회수해야 한다.

④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6조의2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재사용 및 용기의 수거·운반을 포함한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제76조의20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76조의24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6조의2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

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의 회수·재사용·보관·운반·인계하는 과정에서 냉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냉매회수업자는 냉매의 회수(제76조의26제2항에 따른 회수를 포함한다)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회수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3(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냉매회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 중인

냉매를 제76조의27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76조의24(종전의 제76조의1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24(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냉매 회수실적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4. 제76조의23제1항에 따라 휴업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5. 제76조의2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76조의2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76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5부터 제76조의3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5(권리·의무의 승계) ① 냉매회수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냉매회수업자에 대하여 제76조의24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해당 위반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76조의26(공공기관등의 냉매회수의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냉매사용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등은 제76조의17을 준용하여 냉매사용제품의 설치·폐기(매매·임대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냉매사용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등은 제76조의2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냉매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냉매사용기기”는 “냉매사용제품”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냉매의 회수에 관하여는 제76조의20제2항부터 제4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공공기관등”으로 본다.

제76조의27(냉매의 처리방법 등) ①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제76조의26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76조의20제1항에 따라 회수된 냉매를 재사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② 냉매제조·수입자등 및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 또는 냉매회수업자는 제76조의14제2항 및 제3항, 제76조의20제1항에 따라 회수된 냉매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냉매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인

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이 제76조의20제2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회수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업자가 회수한 냉매를 냉매처리업자에게 적절하게 인계하여 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냉매처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냉매를 처리하는 때에는 가능한 경우 냉매를 재생해야 하며,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파괴해야 한다.

⑤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회수한 냉매의 처리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6조의28(냉매의 재생) ① 냉매처리업자가 냉매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냉매를 재생해야 하며, 재생한 냉매(이하 “재생냉매”라 한다)의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생냉매를 판매하려는 자(이하 “재생냉매판매업자”라 한다)는 용기 등에 재생냉매임을 표시해야 하며, 재생냉매의 판매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생냉매의 표시와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9(재생냉매의 품질 검사) ① 재생냉매판매업자는 판매하려는 재생냉매가 제76조의28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검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재생냉매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6조의28제1항에 따른 재생냉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재생냉매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생냉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재생냉매의 품질이 제76조의28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품질검사 및 보고의 방법과 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30(냉매의 파괴) ① 냉매처리업자가 냉매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처리해야 하며, 냉매의 파괴량, 파괴처리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제76조의31(재생냉매의 사용 등) ①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재생냉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냉매사용기기·제품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재생냉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생냉매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
2. 재생냉매의 사용으로 인하여 냉매사용기기·제품의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 및 공공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냉매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냉매 사용량 등을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은 제2항 단서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생냉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76조의32(중전의 제7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32(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제조·수입·판매·회수 및 처리와 냉매사용기기의 사용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6조의33 및 제76조의3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3(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사용·회수·처리와 냉매사용기기·제품의 제조·표시·사용 등에 관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34(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의 사용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6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재충전금지용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4(냉매 감축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사용과 누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업
2. 냉매 정보의 표시에 관한 사업
3. 재생냉매의 사용에 관한 사업
4. 냉매사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업
5. 냉매의 회수에 관한 사업
6. 재생냉매의 품질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업
7. 냉매의 처리에 관한 사업

8. 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9.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제품으로
의 교체 및 관련 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

10. 냉매의 사용·회수·처리량 및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업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
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을 “제76조의10부터 제7
6조의34까지에 따른 냉매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4부터 제12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냉매제조·수입자등

12의3. 냉매사용기기·제품제조자등

12의4.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

12의5. 냉매회수업자

12의6. 냉매처리업자

제85조제8호의2 중 “제76조의13제1항”을 “제76조의24”로 한다.

제91조제12호의3부터 제12호의5까지를 각각 제12호의6부터 제12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3부터 제1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의6(중전의 제12호의3) 및 제12호의7(중전의 제12호의4) 중 “제76조의11제1항”을 각각 “제76조의21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8(중전의 제12호의5) 중 “제76조의12제1항”을 “제76조의2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의9부터 제12호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3. 제76조의10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제품과 용기 등으로부터 냉매를 고의로 누출한 자

12의4. 제76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5. 제76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9. 제76조의24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자

12의10. 제76조의28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재생냉매를 유통한 자

12의11. 제76조의29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2의12. 제76조의3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 파괴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6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제품의 겉면에 냉매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76조의17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설치·폐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76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누출이 확인되었으나 누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6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를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냉매회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76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 중인 냉매를 처리하지 아니한 자
9. 제76조의26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를 회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76조의27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를 냉매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자
11. 제76조의31제2항을 위반하여 재생냉매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2. 제76조의31제4항을 위반하여 재생냉매를 사용하지 않은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자

제94조제2항에 제6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6. 제76조의12을 위반하여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76조의13를 위반하여 냉매의 사용량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제7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재충전용기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9. 제76조의14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용기 내의 잔여 냉매를 회수·처리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제76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용기의 수거·관리실적, 용기 내 잔여 냉매의 회수·처리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76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제품의 제조·수입·판매량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76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
13. 제76조의18제4항을 위반하여 점검결과와 유지·보수 내용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제76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 내용을 기록·보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76조의2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6. 제76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냉매 회수 내용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17. 제76조의22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8. 제76조의23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9. 제76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용기 등에 재생냉매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재생냉매를 유통하거나 재생냉매 판매량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0. 제76조의3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의 파괴량, 파괴처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냉매사용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제76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냉매사용기기 중 종전의 규정(법률 제2184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냉

매사용기기소유자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제76조의18 및 제76조의20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리 대상 냉매사용기기를 설치·운영 중인 자가 종전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그 현황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76조의17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냉매회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76조의21의 개정규정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6조의20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76조의20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76조의2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3. (현행과 같음) <u>24. “냉매사용기기”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열원장치, 열 운반 장치, 자동제어 장치 등 장치의 기능수행을 위해 부속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다)로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u><신 설></u>	<u>25. “냉매사용제품”이란 냉매사용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또는 상업용 등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u><신 설></u>	<u>26. “용기”란 냉매를 저장·보관·운반 또는 회수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u>
<u><신 설></u>	<u>27. “재생”이란 회수한 냉매에</u>

<신 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② (생 략)

<신 설>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라 한다)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

서 불순물 등을 제거하여, 성능 또는 품질을 본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파괴”란 냉매가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안전한 방식으로 제거하여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냉매의 사용, 냉매와 잔여 냉매의 회수·재생·파괴, 용기의 수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삭 제>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2. 냉매의 회수 및 처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와 냉매 관리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76조의10(냉매의 누출금지) 누구든지 냉매사용기기 또는 냉매 사용제품(이하 “냉매사용기기·제품”이라 한다)과 용기 등으로부터 냉매를 고의로 누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11(냉매의 사용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사용 및 누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냉매를 냉매사용기기·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냉매의 종류별 지구온난화지수

2. 대체 가능한 냉매의 개발 수준

3. 대체 가능한 냉매를 사용할 수 있는 냉매사용기기·제품의 기술개발 수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려는 냉매사용기기·제품의 범위, 지구온난화지수와 사용제한의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는 자(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 ·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6조의12(냉매의 제조 · 수입 · 판매량 신고) ① 냉매를 제조 · 수입하거나 제조 · 수입된 냉매를 용기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냉매제조 ·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냉매의 종류, 제조 · 수입 · 판매량, 판매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3(냉매의 사용량 신고)

① 냉매사용기기 ·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지 · 보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냉매를 사용하는 자는 냉매의 종류와 사용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신 설>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4(용기의 사용 등) ①

냉매(제76조의28제1항에 따른 재생냉매를 포함한다)제조·수입자등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② 냉매제조·수입자등이 냉매를 재충전이 가능한 용기(이하 “재충전용기”라 한다)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충전용기를 수거하여 용기 내의 잔여 냉매를 회수하고, 회수한 냉매를 재생하거나 파괴하는 방식으로 처리(이하 이 장에서 “처리”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수거된 재충전용기를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 냉매제조·수입자등이 냉매를 재충전이 금지된 용기(이하 “재충전금지용기”라 한다)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충전금지용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설>

바에 따라 수거하고, 용기 내의 잔여 냉매를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냉매제조·수입자등에게 냉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재충전금지용기의 수거에 협조해야 한다.

④ 냉매제조·수입자등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용기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냉매제조·수입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용기의 수거·관리실적, 용기 내 잔여 냉매의 회수·처리 실적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6조의15(냉매사용기기·제품의 제조·수입·판매량 신고)

① 냉매사용기기·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이하 “냉매사용기기·제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냉매사용기기·제품의 제조·수

<신 설>

입·판매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6(냉매사용기기·제품의 정보 표시) ① 냉매사용기기·제품제조자들은 냉매사용기기·제품의 겉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냉매의 종류 및 지구온난화 지수

2. 충전된 냉매의 양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냉매사용기기·제품제조자들에게 제1항에 따른 표시를 시정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1. 냉매사용기기·제품의 겉면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냉매사용기기·제품에 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냉매사용기기·제품제조자

<신 설>

<신 설>

등은 해당 명령을 이행한 후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7(냉매사용기기의 설치 신고 등)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사용기기의 설치·폐기(매매·임대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76조의18(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의 준수사항) ①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

<신 설>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누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누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냉매 누출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누출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기기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수함으로써 냉매의 추가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④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검 결과와 유지·보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6조의19(개선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사용기지에서 냉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 내용을 기후

누출되어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냉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해당 명령을 이행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의20(냉매의 회수 등) ①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냉매를 회수해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를 폐기하려는 경우
2. 냉매사용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품, 그 밖에 다른 제품의 일부로 이용할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수 있도록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3.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4.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사업장에서 재사용(사업장 내에서 회수한 냉매를 해당 사업장 내의 냉매사용기기·제품에 다시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5. 냉매사용기기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

②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제76조의2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냉매회수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냉매회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 또는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

매회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냉매회수기준에 따라 냉매를 회수해야 한다.

④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들은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6조의2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재사용 및 용기의 수거·운반을 포함한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제76조의20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76조의1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76조의24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6조의22(냉매회수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의 회수·재사용·보관·운반·인계하는 과정에서 냉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냉매회수업자는 냉매의 회수(제76조의26제2항에 따른 회수를 포함한다)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의23(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냉매회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 중인 냉매를 제76조의27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76조의24(냉매회수업 등록의 취

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营业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냉매 회수실적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4. 제76조의23제1항에 따라 휴업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5. 제76조의2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76조의2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
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
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76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
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
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5(권리·의무의 승계)

① 냉매회수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분할·합
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
·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
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냉매회수업자에 대하여 제76조의 24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해당 위반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

<신 설>

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76조의26(공공기관등의 냉매회수 의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냉매사용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등은 제76조의17을 준용하여 냉매사용제품의 설치·폐기(매매·임대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냉매사용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등은 제76조의2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냉매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냉매사용기기”는 “냉매사용제품”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냉매의 회수에

<신 설>

관하여는 제76조의20제2항부터 제4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공공기관등”으로 본다.

제76조의27(냉매의 처리방법 등)

①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제76조의26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76조의20제1항에 따라 회수된 냉매를 재사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② 냉매제조·수입자등 및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 또는 냉매회수업자는 제76조의14제2항 및 제3항, 제76조의20제1항에 따라 회수된 냉매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냉매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인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이 제76조의20제2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회수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업자가 회수한 냉매를 냉매처리업자

<신 설>

에게 적절하게 인계하여 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냉매처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냉매를 처리하는 때에는 가능한 경우 냉매를 재생해야 하며,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파괴해야 한다.

⑤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회수한 냉매의 처리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6조의28(냉매의 재생) ① 냉매처리업자가 냉매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냉매를 재생해야 하며, 재생한 냉매(이하 “재생냉매”라 한다)의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생냉매를 판매하려는 자(이하 “재생냉매판매업자”라 한다)는 용기 등에 재생냉매임을 표시해야 하며,

<신 설>

재생냉매의 판매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생냉매의 표시와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9(재생냉매의 품질 검사)

① 재생냉매판매업자는 판매하려는 재생냉매가 제76조의28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검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재생냉매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6조의28제1항에 따른 재생냉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재생냉매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생냉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신 설>

<신 설>

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재생냉매의 품질이 제76조의28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품질검사 및 보고의 방법과 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30(냉매의 파괴) ① 냉매처리업자가 냉매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처리해야 하며, 냉매의 파괴량, 파괴처리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31(재생냉매의 사용 등)

①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은 자

원순환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는 경우 재생냉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냉매사용기기·제품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재생냉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생냉매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

2. 재생냉매의 사용으로 인하여 냉매사용기기·제품의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 및 공공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냉매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냉매 사용량 등을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은 제2항 단서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생냉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76조의32(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제조·수입·판매·회수 및 처리와 냉매사용기기의 사용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6조의33(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사용·회수·처리와 냉매사용기기·제품의 제조·표시·사용 등에 관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신 설>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34(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냉매의 사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

<신 설>

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0억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76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재
충전금지용기를 수거하지 아니
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5억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4(냉매 감축사업) 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사용과 누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
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업
2. 냉매 정보의 표시에 관한 사
업
3. 재생냉매의 사용에 관한 사

	<u>업</u> <u>4. 냉매사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업</u> <u>5. 냉매의 회수에 관한 사업</u> <u>6. 재생냉매의 품질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업</u> <u>7. 냉매의 처리에 관한 사업</u> <u>8. 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u> <u>9.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제품으로의 교체 및 관련 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u> <u>10. 냉매의 사용·회수·처리량 및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업</u> <u>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u> <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

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 설>

7. (생략)

② · ③ (생략)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
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
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
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
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
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기후

[illegible]

1. ~ 6. (현행과 같음)

7.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
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업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illegible]

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

----- 제76조의
10부터 제76조의34까지에 따른

<u>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1. ~ 12. (생략) <u>12의2.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등</u> <u>12의3. 냉매회수업자</u> <u><신설></u> <u><신설></u> <u><신설></u> 13. (생략) ② ~ ⑤ (생략) 제8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8. (생략) 8의2. <u>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u> 9. (생략)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u>냉매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u> ----- ----- ----- -----. 1. ~ 12. (현행과 같음) <u>12의2. 냉매제조·수입자등</u> <u>12의3. 냉매사용기기·제품제조자등</u> <u>12의4. 냉매사용기기소유자등</u> <u>12의5. 냉매회수업자</u> <u>12의6. 냉매처리업자</u>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5조(청문) ----- ----- -----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u>제76조의24</u>----- ----- 9. (현행과 같음) 제91조(벌칙) ----- -----
--	---

의 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 12의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2의3.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
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

1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제76조의11제1항
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12의5.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
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
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

1. ~ 12의2. (현행과 같음)

12의3. 제76조의10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제품과 용기
등으로부터 냉매를 고의로 누
출한 자

12의4. 제76조의16제3항을 위반
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

12의5. 제76조의19제2항을 위반
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

12의6. 제76조의21제1항-----

12의7. -----
-- 제76조의21제1항-----

12의8. 제76조의22제1항-----

<u><신 설></u>	12의9. 제76조의24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자
<u><신 설></u>	12의10. 제76조의28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재생냉매를 유통한 자
<u><신 설></u>	12의11. 제76조의29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u><신 설></u>	12의12. 제76조의3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 파괴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3. (생 략)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 ----- ----- ---
<u><신 설></u> <u><신 설></u>	1. ~ 3. (현행과 같음) 4. 제76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제품의 겉면에 냉매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76조의17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설치·폐기에 관한 사

<u><신 설></u>	<u>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6. 제76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u>냉매사용기기의 냉매 누출이 확인되었으나 누출 방지 조치 를 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7. 제76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u>냉매를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냉매회 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8. 제76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u>보관 중인 냉매를 처리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9. 제76조의26제2항을 위반하여 <u>냉매를 회수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10. 제76조의27제2항을 위반하 <u>여 냉매를 냉매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11. 제76조의31제2항을 위반하 <u>여 재생냉매를 사용하지 아니 한 자</u>
<u><신 설></u>	12. 제76조의31제4항을 위반하 <u>여 재생냉매를 사용하지 않은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자</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 5. (현행과 같음)

6. 제76조의12을 위반하여 냉매
의 제조·수입·판매량을 신
고하지 아니한 자

7. 제76조의13를 위반하여 냉매
의 사용량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제7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재충전용기를 적절하게 관리
하지 아니한 자

9. 제76조의14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용기 내의 잔여 냉
매를 회수·처리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행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제76조의14제5항을 위반하
여 용기의 수거·관리실적, 용
기 내 잔여 냉매의 회수·처
리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
한 자

11. 제76조의15제1항을 위반하
여 냉매사용기기·제품의 제
조·수입·판매량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76조의18제1항을 위반하
여 냉매사용기기를 정기적으

<u><신 설></u>	<u>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u>
	<u>13. 제76조의18제4항을 위반하</u> <u>여 점검결과와 유지·보수 내</u> <u>용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u> <u>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u>14. 제76조의20제4항을 위반하</u> <u>여 냉매회수 내용을 기록·보</u> <u>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u>15. 제76조의21제2항에 따른 냉</u> <u>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u> <u>아니한 자</u>
<u><신 설></u>	<u>16. 제76조의22제3항을 위반하</u> <u>여 냉매 회수 내용을 기록·</u> <u>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u> <u>지 아니한 자</u>
<u><신 설></u>	<u>17. 제76조의22제4항을 위반하</u> <u>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u> <u>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u>18. 제76조의23제1항을 위반하</u> <u>여 휴업·폐업·재개업을 신</u> <u>고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u>19. 제76조의28제2항을 위반하</u> <u>여 용기 등에 재생냉매 표시</u> <u>를 하지 아니하고 재생냉매를</u> <u>유통하거나 재생냉매 판매량</u> <u>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u>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4의3. (생 략)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 제

1의2. ~ 7. (생 략)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20. 제76조의3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의 파괴량, 파괴처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 -----

-----.

1. ~ 14의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④ -----

-----.

1의2. ~ 7. (현행과 같음)

<삭 제>

<u>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u> <u>처리 내용을 기록·보존 또는</u> <u>제출하지 아니한 자</u> <u>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u> <u>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u> <u>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u> 8.·9. (생 략) ⑤·⑥ (생 략)	<u><삭 제></u> 8.·9.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	---